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2025. 6.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55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5년 5월 23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5월 26일(월)

2. 제출사유

천문과학에 대한 국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제3조)
- 나. 업무 및 기능,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안 제4조~제5조)
- 다.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료 등, 이용료 감면 등(안 제6조~제9조)
- 라. 이용의 제한, 행위의 제한 및 손해배상 등(안 제10조~제12조)
- 마.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 바. 준용(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4. 17. ~ 5. 7.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2025년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25. 5. 12.)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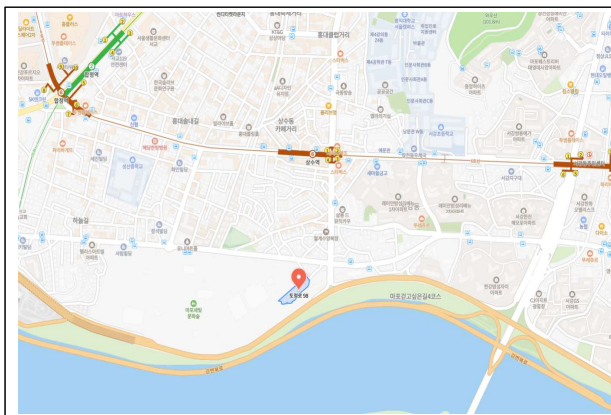
- 동 조례 제정안은 2025년 5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지난해 11월부터, 마포구는 구민의 과학지식 증진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마포 새빛문화숲 주민편의시설(토정로 98)’ 내 천문대¹⁾를 조성(옥상, 4층 다목적실) 중이며, 2025년 7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마포 365 천문대’ 추진 현황 : 제276회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2025.6.) 참고

- 2025. 1.: 천체관측실(원형돔) 제작 및 옥상공원 조성 설계용역 준공
- 2025. 2.: 주망원경(200mm 굴절망원경) 구매·설치 계약, 타 기관 천문대 벤치마킹
- 2025. 3.: 천체관측실(원형돔) 제작설치 계약, 옥상공원 조성 공사 추진(주민편의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
- 2025.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제정 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옥상망원 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매
- 2025. 5.: 마포365천문대 운영방안 검토
- 2025. 6.: 천체관측실 설치, 옥상공원 조성 및 천문교육실 조성 완료, 조례 제정
- 2025. 7.: 마포365천문대 운영 실시

「마포365천문대」 조성 개요

- 위 치: 마포 새빛문화숲 주민편익시설(토정로 98) 내
- 조성기간: 2024. 11. ~ 2025. 6.
- 조성규모
 - 옥 상: 천체관측실(지름 5m 원형돔), 옥상공원(635㎡)
 - 4층 다목적실: 천문교육실(65㎡)
- 장비현황
 - 200mm 굴절망원경, 독일식 적도의 마운트, 100mm 태양망원경
 - 전망용 쌍안경 3대, 보조 망원경 2대, 실습용 망원경 5대
- 위치 및 조감도



위 치(토정로 98)



조 감 도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체계〉

제1조(목적)	제8조(이용료 등)
제2조(정의)	제9조(이용료 감면 등)
제3조(위치)	제10조(이용의 제한)
제4조(업무 및 기능)	제11조(행위의 제한)
제5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손해배상 등)
제6조(이용시간)	제13조(사무의 위탁)
제7조(휴관일)	제14조(준용)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 위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마포365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는 천문대의 이용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²⁾을 규정하고,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명시하였음.
- 천문대 특성상 주요 이용 목적이 야간 천체 관측에 있다는 점에서 굳이 오전부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오전 운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및 비효율성 문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 천문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시범 운영 후 구체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에서는 천문대는 휴관일 제외하고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특정 공휴일(1월 1일·설날·추석)³⁾과 매주 월요일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2) 붙임1: 타 자치단체 천문대 운영시간 참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 제8조는 천문대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나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성인으로 이용객을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별표 1의 “이용료”에 초·중·고등학생은 1,000원, 대학생, 성인은 2,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타 천문대의 이용료도 성인 2,000원 ~ 6,000원, 청소년 1,000원 ~ 3,000원 범위에서 책정되어 있어, 타 천문대 이용료와 비교하면 비교적 이용료가 저렴한 편임.

< 타 자치단체 천문대 이용료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어린이·청소년	성인
마포구	1,000	2,000
노원구 천문우주과학관	1,000	2,000
강서구 별빛 우주과학관	1,000	2,000
곡성군 섬진강천문대	2,000	4,000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2,000	4,000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2,000	4,000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2,000	3,000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3,000	6,000
영양군 반딧불이 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	3,000	4,000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1,000~2,000	3,000

- 별표 1의 “수강료”는 초·중·고등학생은 10,000원, 대학생, 성인은 15,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 천문대 수강료를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 타 자치단체 천문대 수강료 현황 >

구분	시설명	수강료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초등학생: 50,000원~60,000원(2개월, 6~7회) (1시간 기준,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 1회 7,142원~1만원
강서구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초등학생: 1회 1만원 (월1회) (1시간 기준,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초등학생: 54,000원(3개월, 월1회)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천문대 관측 무료) - 1회 18,000원
김해시	김해천문대	·일반: 3,000원(1시간 기준)

- 안 제9조는 이용료 면제 대상자로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 당 1명) 등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의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이용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이용자 등이 천문대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천문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천문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법 규정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이번 조례 제정은 천문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우리 구민들에게도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쉽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천문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천문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각종 감면 대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운영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구 재정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과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붙임 1

우주과학관 및 천문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 5월 기준)

순번	자치단체	법 규 명	공포일자	이용시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6.3.24.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9:00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8:00
2	서울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2021.2.18.	09:30~17:30
3	서울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2022.7.6.	09:30~18:00
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2024.9.24.	14:00부터 22:00까지
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천문대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12.21.	14시부터 22시까지로
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2024.4.2.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7	대전광역시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2.30.	14시부터 22시까지
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1.30.	주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 20시부터 22시까지
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12.10.	14시부터 22시까지
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 대 운영 및 관리조례	2025.5.16.	14:00부터 22:00까지
1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2023.11.3.	13:00부터 22:00까지
1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7.12.	1.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7.1.	10:00 ~ 22:00
1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7.2.	14:00부터 22:00까지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